

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1972. 11. 25. 제정

2010. 7. 7. 개정

2017. 8. 16. 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 두는 연구기관의 설립·통합·폐지, 조직 및 운영, 평가 등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연구기관의 소속) 본교의 연구기관은 연구영역, 학문간 연계성, 연구인력의 구성, 본교의 정책 등에 따라 본부 소속 연구기관, 대학(원) 소속 연구기관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기관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07.10.17)

제 3 조 (연구기관의 설립 등의 절차) 총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구기관의 설립, 통합 및 폐지를 할 수 있다.

제 4 조 (전임교원의 발의에 의한 연구기관 설립) ①본교의 전임교원 5인 이상이 연구기관의 설립을 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연구기관 설립의 제안을 할 수 있다.

1. 설립취지
2. 사업계획 및 재정확보계획
3. 시설·공간·인력확보계획
4. 참여교수의 명단 및 3년간의 연구실적
5. 본교의 연구기관 규정 준칙에 따른 연구기관 규정안

②총장은 제1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.

제 5 조 (총장의 직권에 의한 연구기관의 설립) ①총장이 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구기관 설립준비위원회(이하 “설립준비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설립업무를 수행하게 한다.

②설립준비위원회는 당해 연구기관의 설립 후 2년간의 사업계획, 재정계획의 개요 및 연구소 규정안 등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총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후 제3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해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.

제 5 조의 2 (본부 소속 국가지원연구기관의 설립) ①국책과제 선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부 소속의 국가지원연구기관(이하 “국가지원연구기관”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

②국가지원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과제책임자는 과제 선정 후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연구기관 규정안을 연구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연구기관 설립의 제안을 할 수 있다.

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③총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구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④국가지원연구기관은 그 설립근거가 된 사업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함을 원칙으로 한다.

(본조신설 2005.8.17)

제 6 조 (연구기관심의위원회) ①연구기관의 설립·통합·폐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처에 연구기관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심의위원회는 대학원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연구처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.

③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구기관의 기능·시설·연구영역·연구실적·학술활동·재정능력 및 운영상태 등을 평가한다.

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. (본항신설 2007.10.17)

⑤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본항신설 2007.10.17)

⑥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연구기관의 설립·통합·폐지 및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07.10.17)

제 7 조 (연구기관의 규정) ①연구기관의 규정을 제정할 때 모범으로 삼게 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 규정 준칙을 둔다. (개정 2010.7.7., 2017.8.16.)

②연구기관은 별지 서식 제1호 또는 제2호 중 해당 준칙에 따른 연구기관 규정을 두고 그 규정에 따라 조직과 운영을 하여야 한다. (개정 2010.7.7., 2017.8.16.)

제 8 조 (현금출납) 모든 연구기관의 현금출납 업무는 재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 (개정 2017.8.16.)

제 9 조 (사업계획 및 보고) 모든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(본조신설 2007.10.17)

부 칙(1972. 11. 25 제정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1972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본교의 모든 연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구기관 규정 개정안을 작성하여 당해 연구기관 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73년 2월 28일까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부 칙(1981. 6. 17 개정)

이 규정은 198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1. 12. 14 전문개정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본교 연구기관의 특별연구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객원연구위원으로 본다.

부 칙(2005. 8. 17 개정)

이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10. 17 개정)

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7. 7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8. 16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(서식 제1호) (2017.8.16. 개정)

(본부소속 연구기관 규정 준칙)

○○연구소(원) 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○○연구소(원)(이하 “연구소(원)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사업) 연구소(원)는 ...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
2.
3.

제 3 조 (소(원)장·부소(원)장) ①연구소(원)에 소(원)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(원)장 1인을 둘 수 있다.

②소(원)장과 부소(원)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.

③소(원)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(원)의 업무를 관장하며, 부소(원)장은 소(원)장을 보좌하고 소(원)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.

제 4 조 (조직) ①연구소(원)에 ...부, ...부, ...부(또는 ...연구실, ...연구실, ...연구실) 및 행정실을 둔다.

②...부(또는 ...연구실)는 ...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③...부(또는 ...연구실)는 ...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④...부(또는 ...연구실)는 ...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⑤행정실은 ..., ..., 서무 회계와 기타 타 부(또는 연구실)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.

제 5 조 (부장) ①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(또는 연구실)에 부장(또는 실장)을 둘 수 있다.

부장(또는 실장)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(원)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②각 부장(또는 실장)은 소(원)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
제 6 조 (연구위원 등) ①연구소(원)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(원)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③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(원)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

④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(원)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7 조 (연구원 등) ①연구소(원)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(원)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
③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(원)장이 임명한다.

④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
제 8 조 (행정인력) ①연구소(원)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(원)장이 임명한다.

②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(원)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

(개정 2010.7.7)

제 9 조 (운영위원회) ①연구소(원)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○

○연구소(원)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소(원)장, 부소(원)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○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(원)장이 된다.

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(원)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연구소(원)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(원)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연구소(원)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0 조 (사업 계획 및 보고) 소(원)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(개정 2010.7.7)

제 11 조 (경비 및 현금출납) ①연구소(원)의 경비는으로 충당한다.

②연구소(원)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(서식 제2호) (2017.8.16. 개정)

(대학(원)소속 연구기관 규정 준칙)

○○연구소 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○○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소속)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○○대학(원)에 둔다.

제 3 조 (사업) 연구소는 …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……
2. ……
3. ……

제 4 조 (소장·부소장) ①연구소에 소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.

②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○○대학(원)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③소장은 ○○대학(원)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,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 (조직) ①연구소에 …부, …부, …부(또는 …연구실, …연구실, …연구실) 및 행정실을 둔다.

- ②…부(또는 …연구실)는 ……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③…부(또는 …연구실)는 ……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④…부(또는 …연구실)는 ……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⑤행정실은 …, …, 서무 회계와 기타 타 부(또는 연구실)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.

제 6 조 (부장) ①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(또는 연구실)에 부장(또는 실장)을 둘 수 있다.

부장(또는 실장)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○○대학(원)장이 임명한다.

②각 부장(또는 실장)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
제 7 조 (연구위원 등) ①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○○대학(원)장이 임명한다.

③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○○대학(원)장이 위촉한다.

④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- 제 8 조 (연구원 등) ①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②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③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.
④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- 제 9 조 (행정인력) ①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.
②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

(개정 2010.7.7)

- 제 10 조 (운영위원회) 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○○ 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
②위원회는 ○○대학(원)장, 소장, 부소장 및 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○○대학(원)장이 임명하는 ○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○○대학(원)장이 된다.
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○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 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3.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4.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
 5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- 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1 조 (사업 계획 및 보고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○○대학(원)장,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(개정 2010.7.7)

- 제 12 조 (경비 및 현금출납) ①연구소의 경비는으로 충당한다.
②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